

## 제4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(서면회의)

1. 회의일시 : 2011. 7. 21.(목)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

3. 참석위원 : 최시중 위 원 장  
홍성규 부위원장  
김충식 상임위원  
신용섭 상임위원  
양문석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 음

5. 회의내용

가. 서면회의 사유

- 「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14조(서면결의)제1항 제1호에 의거, 제2009-30차 전원회의(2009. 7. 9), 제2010-1차 전원회의(2010. 1. 14), 제2011-17차 전원회의(2011. 3. 21)에서 의결한 ‘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·반복적 안건 또는 경미한 안건’에 해당됨

**나. 의결사항**

**(1) 「자가전기통신설비 목적의 사용의 특례범위」(고시)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**  
 - (2011-43(서)-147)

○ 유비쿼터스도시(u-City)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u-City와 일부 공공기관의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 마련한 「자가전기통신설비 목적의 사용의 특례범위」 고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- 지자체가 구축하는 u-City의 자가전기통신설비와 교통, 환경 및 방범·방재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(예: 경찰청, 기상청 등)의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상호 연계하여 관련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특례범위 확대

**< 교통·환경·방범 및 방재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>**

업무	수행기관	이용정보
교통	국토해양부, 도로공사, 철도공사 등	교통정보, 버스정보 등
환경	환경부, 기상청, 상수도사업본부 등	대기오염정보, 상수도누수정보 등
방범·방재	행정안전부, 경찰청, 소방방재청 등	공공지역 방범정보, 화재정보 등

**(2) 「대한민국 정보통신부와 베트남 우정통신부 간의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상호 인정협정」(고시)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** - (2011-43(서)-148)

○ 한-베트남 상호인정협정(MRA) 대상기기를 확대하고, 양국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해당 부처 명칭 변경을 반영하기 위한 「대한민국 정보통신부와 베트남 우정통신부 간의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상호인정협정」 고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① 대상기기 확대

- 현재 한-베트남 상호인정협정(MRA)에 따라 일반전화기, 휴대폰 등 6종의 방송통신기기를 국내기업이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경우, 국내 시험기관에서 시험 후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베트남에서 인정

※ 6종 기기 : PSTN 유선단말기, 무선전화기, ISDN 단말기, GSM 휴대폰, CDMA 휴대폰, PHS 휴대폰

- 개정안은 국내 시험결과를 베트남에서 인정하는 대상기기에 무선랜, 컴퓨터 등 7종의 방송통신기기를 추가하여, 총 13종의 방송통신기기에 대해 확대 시행

※ 7종 기기 : 무선랜, 9kHz~25MHz 근거리 무선기기, 아날로그TV 방송서비스용 송신기, 데스크탑 PC, 노트북 컴퓨터, PDA, 네트워크장비(라우터, 허브 등)

② 명칭변경

- 대한민국과 베트남 정부의 직제개편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 상호인정협정의 해당 부처 명칭을 변경('대한민국 정보통신부'와 '베트남 우정통신부'를 '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'와 '베트남 정보통신부'로 변경)

(3) 종합유선방송 이용요금 승인에 관한 건 - (주)서경방송 등 2개사 - (2011-43(서)-149)

- 방송법 제77조제1항에 의거, (주)서경방송 등 2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이용요금 승인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함
- 주요 내용

< 승인내용 >

① 아날로그 기본형 상품 폐지\* : (주)서경방송

상 품 명	내 용	승인 조건
아날로그 기본형 상품 (아날로그 보급형 상품 + CH 14개)	디지털 전환을 위해 가입자가 없는 아날로그 기본형 상품 폐지	승인 신청 시 제출한 주파수 운용 계획대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주파수 대역의 50% 이상을 실시간방송 채널로 운용할 것

\* 「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케이블TV 채널운용 방안」('09. 7. 2. 방송통신위원회 보고)에 따라 가입자가 없는 아날로그 기본형 상품 폐지에 따른 승인조건 부과

② 디지털 부가서비스 상품 신설 : JCN울산중앙방송(주)

상 품 명	내 용	이용요금(상한)	비 고
VOD [RVOD, 프리미엄HD]	디지털케이블TV를 통해서 현재 극장에서 상영중인 영화를 동시에 VOD로 제공	6,000원	편당

(4)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시설 변경허가에 관한 건 - (주)서경방송 등 5개사 - (2011-43(서)-150)

- 방송법 제15조제1항에 의거, (주)서경방송 등 5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시설 변경허가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함
- 주요 내용

종합유선방송사업자	변경사항	신청 주요내용
(주)서경방송	운용채널 및 시설변경	디지털채널 확대 및 아날로그 채널 축소에 따른 장비 신설 및 삭제
(주)티브로드 계열 4개사*		디지털방송 서비스 확대 및 품질향상을 위한 장비 신설

\* (주)티브로드수원방송, (주)티브로드서부산방송, (주)티브로드동남방송, (주)티브로드낙동방송

**(5)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에 관한 건 - Eurosport SA 등 2개사 - (2011-43(서)-151)**

○ ‘방송법’ 제78조의2제1항 및 ‘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’ 제21조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외국방송 재송신을 하고자 하는 Eurosport SA의 Eurosport HD 등 2개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 신청 건에 대해 조건을 부과하여 승인하기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**< 승인내용 >**

외국방송 사업자명	방송채널명	국적	방송분야	방송언어
Eurosport SA	Eurosport HD	프랑스	스포츠	영어
Baby Network Limited	BabyTV	영국	영·유아	영어

**< 승인조건 >**

- ① 방송분야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예정일로부터 3월 전까지 변경승인을 신청하고,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국내 지사, 사무소, 대리인 또는 채널명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③ 승인심사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.
- ④ 매년 3월 31일까지 직전 연도의 국내 송출현황 자료,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액 현황 자료, 기여계획서상의 이행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로 재송신 승인에 관한 세부 심사기준이 개정되었을 때,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맞추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⑥ 승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될 수 있다.
  - 방송내용이 방송법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때
  -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
  - 방송내용이 형법, 저작권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는 때

**(6)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에 관한 건 - (주)대교 등 2개사 - (2011-43(서)-152)**

○ 방송법 제9조제5항에 의거, (주)대교, (주)케이엠에이치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**< (주)대교, (주)케이엠에이치의 등록내용 >**

신청법인	채널명	방송분야 (방송유형)	대표자	최다액출자자 (지분율)	납입자본금 (실질자본금)
(주)대교	어린이TV	어린이 (텔레비전)	박태영 박명규	(주)대교홀딩스 외 25명 (69.9%)	520.6억원 (7.2억원)
(주)케이엠에이치	카툰 플러스 (Cartoon Plus)	만화 (데이터)	한찬수	최상주 외 7명 (37.99%)	61.9억원 (168.3억원)